



TaxFlash

Tax Indonesia / March 2025 / No. 08



조세 범죄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

Procedures for Tax Investigation of Criminal Acts^{P1}

Sanction waivers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Core Tax P5

Temporary VAT incentive for economy class domestic flights^{P6}

2025년 2월 25일, 재무부 장관(MoF)은 범죄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를 규정한 PMK-17¹을 발표하였습니다. PMK-17 대부분의 조항은 이미 국세기본법(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, KUP), GR-50², PMK-55³, SE-06⁴에 명시되어 있으나, 신규 규정에서는 조세범죄 행위에 대한 상세한 세무조사 절차 및 기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PMK-17은 세무조사 종료 절차만을 다룬 PMK-55 및 PMK-18/2021의 제 108 조를 철회하고, 개정된 내용을 PMK-17에 반영하였습니다. 상세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형법(Kitab Undang-Undang Hukum Pidana) 및 자금세탁 방지 및 근절법(Pencegahan dan Pemberantasan Tindak Pidana Pencucian Uang)에 명시된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.

¹ MoF Regulation No.17 Year 2025 (“PMK-17”) dated and effective from 25 February 2025

² Government Regulation No.50 Year 2022 ("GR-50") dated and effective from 12 December 2022

³ MoF Regulation No.55/PMK.03/2016 (“PMK-55”) dated and effective from 8 April 2016 as amended by MoF Regulation No.18/PMK.03/2021 (“PMK-18/2021”) dated and effective from 17 February 2021

⁴ Director General of Taxes ("DGT") Regulation No.SE-06/PJ/2014 ("SE-06") dated and effective from 3 February 2014



PMK-17에 명시된 세부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- a) 소환 (*Pemanggilan*);
- b) 조사 (*Pemeriksaan*);
- c) 체포 (*Penangkapan*);
- d) 구금 (*Penahanan*);
- e) 수색 (*Penggeledahan*);
- f) 차단 및 압류 (*Pemblokiran dan/atau Penyitaan*);
- g) 전자 데이터 처리 (*penanganan Data Elektronik*)
- h) 출국금지 (*Pencegahan*);
- i) 피의자 결정 (*penetapan Tersangka*);
- j) 서류 작성 (*Pemberkasan*);
- k) 사건 서류 제출 (*penyerahan berkas perkara*);
- l) 피의자 및 증거물 책임 이관 (*penyerahan tanggung jawab atas Tersangka dan barang bukti*); 및/또는
- m) 조사 종료 (*penghentian Penyidikan*).

본 TaxFlash는 PMK-17에 따른 모든 개정사항이 아니라, 주요한 개정 사항만을 다루고 있습니다:

1. 조사 개시 통지서 발행

세무조사는 사건 보고서(Incident Report)를 바탕으로 작성된 조사 명령서(Surat Perintah Penyidikan, Sprindik)에 따라 진행됩니다. Sprindik는 조사 개시 통지서(Surat Pemberitahuan Dimulainya Penyidikan, SPDP) 발급의 근거가 됩니다. PMK-17에서는 Sprindik 발급 후 7일 이내에 SPDP가 인도네시아 경찰 수사관을 통해 검사에게 전달되거나, 조사 대상자/피의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2. 압류 (*Pemblokiran*)

조사관은 증거 확보 또는 국가 세수 회복을 위해 국가토지청, 은행, 인도네시아 경찰 교통국 및/또는 자산 관리 기관(이하 "권한 있는 당사자"이라 함)에 자산 압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PMK-17에서는 압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, 조사관이 권한 있는 당사자에게 자산 압류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3. 출국금지 (*Pencegahan*)

피의자/증인이 인도네시아를 떠날 가능성이 있거나 조사 과정에서 의심 사항이 있는 경우, MoF가 발행한 명령에 따라 출국금지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. PMK-17에서는 출국금지 기간이 최대 6개월 동안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해당 명령은 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도네시아 이민국에 공유되며,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/증인에게 전달됩니다.

PMK-17에 따르면, 긴급한 상황에서 MoF가 해당 명령 발행 전에 이민국 담당자나 검문소에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MoF 는 긴급 요청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출국금지 명령을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 시 해당 긴급 요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PMK-17 에 따르면 MoF 는 다음의 기한 내 출국금지 조치의 연장 또는 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:

- 이민국에 신청: 연장의 경우 첫 출국금지 조치 만료일로부터 3 일 전까지 이민국에 신청하여야 하며, 해제의 경우 해당 명령일로부터 3 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피의자/증인(가족 및 해당 국가의 대표단 포함)에게 공지: 연장 또는 해제 결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야 합니다.

출국금지 조치는 한 번 연장될 수 있으며, 최대 6 개월 동안 유효합니다.

4. 피의자 결정(*penetapan Tersangka*)

PMK-17 에 따르면, 피의자 결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검사(인도네시아 경찰 수사관을 통해) 및 피의자에게 해당 내용이 통지되어야 합니다.

5. 사건서류 제출 (*penyerahan berkas perkara*)

PMK-17 에 따르면, 검사가 사건 서류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, 조사관은 그 확인일로부터 7 일 이내 KUP 법 제 38 조, 제 39 조 및/또는 제 39A 조에 따라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6. 조사 종료 (*penghentian Penyidikan*)

PMK-17 에서는 조사가 종료되었으나 증거나 자산이 아직 압류된 상태인 경우(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), 조사관이 압류된 증거나 자산을 다음의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:

- 압류 당사자;
- 정당한 당사자; 또는
- 법률/법원 결정에 의해 지정된 당사자.

7. 조사종료에 따른 납부액

납세자/피의자는 조사 종료 전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세청(DGT)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DGT 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1 개월 내에 서면 답변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 만약 해당 답변서에 납부 대상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, DGT 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납부 대상 금액을 포함한 서면 답변서를 전달하여야 합니다.

납세자/피의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, PMK-17 에 따라 조사가 계속 진행되며, 다음의 경우 납세자/피의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:

- a) 피의자와 증거의 책임이 검사에게 이관되거나 또는 형사 사건이 법원에 이관 시 납부된 금액; 또는
- b) 형사 벌금의 납부

PMK-17에 따르면, 여러 납세자/피의자가 하나의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, 각 납세자/피의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을 고려하여 비례적으로 계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:

- a) 발견된 증거에 대한 납세자/피의자의 기여도;
- b) 납세자/피의자가 얻는 이익;
- c) 과실 및 범법 행위의 정도; 및/또는
- d) 형법에 근거한 납세자/피의자의 행위 등 기타 고려 사항.

각 피의자는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고 조사의 종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

PMK-17에 따르면, 조사관이 납세자/피의자의 납부 금액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사건 서류에 오류가 없으나,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피의자 및 증거의 책임을 검사에게 이관할 수 있습니다:

- a) 납세자/피의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;
- b) DGT가 납세자/피의자가 제출한 조사 종료 요청을 거절한 경우; 또는
- c) 법무부가 MoF에 의한 조사 종료 요청을 거부한 경우,

8. 납부액에 대한 정보 요청

PMK-17에 따르면, 피의자 및 증거의 책임이 조사관에서 검사에게 이관되었거나 형사 사건이 법원에 이관된 경우에도, 피의자/피고(Terdakwa)는 여전히 납부 대상 금액을 완납할 수 있습니다. 필요 시 검사는 납부 대상 금액에 대한 정보를 DGT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, DGT는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법 집행 부서(Law Enforcement Implementation Unit)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
9. 경과 규정

PMK-17에서는 납세자가 조사종료를 위해 납부금액 정보를 요청하였으나, 2025년 2월 25일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, 2025년 2월 25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Core Tax 시스템의 구현과 관련된 제재 면제

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Core Tax 시스템을 구현하는 동안 납세자들은 세금 납부 및 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DGT는 지연에 따른 행정 제재가 면제되는 규정이 담긴 KEP-67⁵을 발표하였습니다. 해당 규정에 의거 과도기 동안 세금 납부 및 신고 지연에 따라 세금 징수서가 발행되지 않으며, 이미 발행된 경우에도 각 지방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해당 제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납부기한 경과 후 다음 기간 내 이루어진 지연납부 및 지연신고에 한하여 행정 제재가 면제됩니다:

1. 지연 납부

- a. 소득세법 제 15 조, 21 조, 22 조, 23 조, 25 조, 26 조 및 4(2)조, 토지 및/또는 건물("L&B") 양도 제외:
 - 2025년 1월 과세기간: 2025년 2월 28일까지
- b. L&B 양도에 대한 소득세 제 4(2)조 및 인지세:
 - 2024년 12월 과세기간: 2025년 1월 31일까지
 - 2025년 1월 과세기간: 2025년 2월 28일까지
- c. 부가가치세("VAT") 또는 사치세("LST"):
 - 2025년 1월 과세기간: 2025년 3월 10일까지

2. 신고 지연

- a. 일정 매출액 기준 소액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 제 21/26 조, 25 조, 제 4(2)조 및 통합 세금 신고서:
 - 2025년 1월 과세기간: 2025년 2월 28일까지
 - 2025년 2월 과세기간: 2025년 3월 31일까지
 - 2025년 3월 과세기간: 2025년 4월 30일까지
- b. L&B 양도에 대한 소득세 제 4(2)조 및 인지세:
 - 2024년 12월 과세기간: 2025년 1월 31일까지
 - 2025년 1월 과세기간: 2025년 2월 28일까지
 - 2025년 2월 과세기간: 2025년 3월 31일까지
 - 2025년 3월 과세기간: 2025년 4월 30일까지
- c. VAT/LST:
 - 2025년 1월 과세기간: 2025년 3월 10일까지
 - 2025년 2월 과세기간: 2025년 4월 10일까지
 - 2025년 3월 과세기간: 2025년 5월 10일까지

⁵ DGT Decree No.KEP-67/PJ/2025 ("KEP-67") dated and effective from 27 February 2025

국내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편에 대한 임시 VAT 세제 혜택

2025년 2월 28일 MoF는 PMK-18⁶을 발표하였으며, 다가오는 Eid al-Fitr 연휴 동안 국내 항공편에 대한 부분적인 VAT 세제 혜택(정부 부담)이 제공됩니다.

본 세제 혜택은 다음 기간에 해당되는 국내 항공편의 이코노미 클래스에만 적용됩니다:

- 비행기표 구입 시기: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4월 7일까지
- 여행 기간: 2025년 3월 24일부터 2025년 4월 7일까지

일반적으로 해당 비행기표에는 PMK-131⁷ 규정에 따라 실질 세율인 11%의 VAT 가 부과됩니다. VAT 과세표준에는 항공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(예를 들어 기본 운임, 유류 할증료, 기타 비용)가 포함되지만, 공항세(airport taxes)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
PMK-18에 따르면, 총 11%의 VAT 중 다음과 같이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:

- 5%는 서비스 수령인(즉, 승객)이 부담;
- 6%는 정부가 부담

본 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항공사는 다음을 수행하여야 합니다:

- 5% VAT 부분에 대한 VAT 인보이스 발행;
- 정부가 부담한 VAT의 세부 내역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

상기 VAT 인보이스와 세부 내역은 관련 월별 VAT 신고서에 누적되어 신고되어야 합니다.

⁶ MoF Regulation No.18 Year 2025 ("PMK-18") dated 28 February 2025 and effective from 1 March 2025

⁷ MoF Regulation No.131 Year 2024 ("PMK-131") dated 31 December 2024 and effective from 1 January 2025

Your PwC Indonesia Contacts:

Abdullah Azis abdullah.azis@pwc.com	Gerardus Mahendra gerardus.mahendra@pwc.com	Peter Hohtoulas peter.hohtoulas@pwc.com
Adi Poernomo adi.poernomo-c@pwc.com	Hasan Chandra hasan.chandra@pwc.com	Raemon Utama raemon.utama@pwc.com
Adi Pratikto adi.pratikto@pwc.com	Hendra Lie hendra.lie@pwc.com	Riyadi riyadi.riyadi-c@pwc.com
Adrian Hanif adrian.hanif@pwc.com	Hisni Jesica hisni.j.jesica@pwc.com	Runi Tusita runi.tusita@pwc.com
Alexander Lukito alexander.lukito@pwc.com	Hyang Augustiana hyang.augustiana@pwc.com	Ryuji Sugawara ryuji.sugawara@pwc.com
Ali Widodo ali.widodo@pwc.com	Irene Satyanagara irene.satyanagara@pwc.com	Sukma Alam sukma.alam-c@pwc.com
Aman Santosa aman.santosa-c@pwc.com	Kianwei Chong kianwei.chong@pwc.com	Surendro Supriyadi surendro.supriyadi-c@pwc.com
Andrias Hendrik andrias.hendrik@pwc.com	Lukman Budiman lukman.budiman@pwc.com	Susetiyo Putranto susetiyo.putranto@pwc.com
Angeline angeline.angeline@pwc.com	Made Natawidnyana made.natawidnyana@pwc.com	Sutrisno Ali sutrisno.ali-c@pwc.com
Anton Manik anton.a.manik@pwc.com	Mardianto mardianto.mardianto-c@pwc.com	Suyanti Halim suyanti.halim@pwc.com
Antonius Sanyojaya antonius.sanyojaya@pwc.com	Margie Margaret margie.margaret@pwc.com	Tjen She Siung tjen.she.siung@pwc.com
Avinash Rao a.rao@pwc.com	Marlina Kamal marlina.kamal@pwc.com	Turino Suyatman turino.suyatman@pwc.com
Ay Tjhing Phan ay.tjhing.phan@pwc.com	Nicholas Sugito nicholas.sugito@pwc.com	William Christopher william.christopher@pwc.com
Brian Arnold brian.arnold@pwc.com	Nikolas Handradjid nikolas.handradjid@pwc.com	Yessy Anggraini yessy.anggraini@pwc.com
Dexter Pagayonan dexter.pagayonan@pwc.com	Novie Mulyono novie.mulyono@pwc.com	Yuliana Kurniadja yuliana.kurniadja@pwc.com
Enna Budiman enna.budiman@pwc.com	Oki Octabiyanto oki.octabiyanto@pwc.com	Yunita Wahadaniah yunita.wahadaniah@pwc.com
Esa Perdana esa.perdana@pwc.com	Omar Abdulkadir omar.abdulkadir@pwc.com	
Gadis Nurhidayah gadis.nurhidayah@pwc.com	Otto Sumaryoto otto.sumaryoto@pwc.com	

www.pwc.com/id



PwC Indonesia



@PwC_Indonesia

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,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,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@pwc.com.

DISCLAIMER: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.

© 2025 PwC Tax Indonesia. All rights reserved.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,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.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. Please see www.pwc.com/structure for further details.